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3. 5. 11 선고 2022가합32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오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희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피고와 유한회사 E 사이에 충남 예산군 F 대 1424.4㎡에 관하여 2021. 1.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6.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153,972원을 삭제하고, 원고들과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6.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153,972원을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250,17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유한회사 E에 대한 채권

유한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1. 2. 원고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6. 11.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25%의 비율로 정하여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개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H회사는 소외 회사 소유의 충남 예산군 F 대 14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1. 6.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202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2021. 1.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①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의 원리금 5억 3,000만 원에 대하여, ② I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원리금 2,048,589,040원에 대하여, ③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로서 대여금 원금 26억 원에 대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5.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채권자들의 배당이의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22. 6. 8.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순위로 220,153,972원을 배당하고, 배당요구권자인 원고들과 I에 대하여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과 I은 2022. 6. 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I은 2022.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가단33548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원고들은 2022.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7, 18, 26, 33, 34,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허위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고,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금원은 적법하게 배당이의를 한 원고들과 I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되어야 하고, 배당기일 기준으로 원고들의 채권액은 5억 3,000만 원, I의 채권액은 2,048,589,040원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갑 15 내지 32호증, 을 3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1. 1. 12. 무렵 소외 회사에 대하여 26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당시 소외 회사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2017. 9. 11.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1억 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피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 9. 11. 6,500만 원, 2022. 1. 26. 4,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약정금 채권은 피고에게 전부 양도되었으며,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은 2016. 6. 16.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원고들 포함)을 대표하는 1 등 4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대물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2, 6 내지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7. 3.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3.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② 원고들과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7. 9. 11.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약정서(갑 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는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약정 당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 4,000만 원에 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의 변제기 2018. 9. 30.,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 연 20%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1주일 내에 작성 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한다(제2항), 피고는 2018. 9. 30.까지 잔액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제3항), 소외 회사 및 피고가 제2항을 이행하면 제3항의 채무는 소멸하고,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피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한다(제4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들은 2017. 9. 11.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 위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한 사실, ④ 원고 B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채권 중 원고 A, C의 각 7/20 지분까지 양수하여 소외 회사 및 피고에게 위 약정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잔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 26. 원고 B에게 잔금 중 원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15, 18 내지 23, 29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관한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전부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약정서 제2항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어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에다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 등 4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더러, 을 17호증의 기재만으로 소외 회사의 대물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7. 9. 11. 6,500만 원, 2022. 1. 26. 4,0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위 돈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민법 제476조에 따른 지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결국 위 변제금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전액 충당되고,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원리금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인 2022. 6. 8. 기준으로 4억 2,500만 원이 남게 된다.1)

나) 금전 대여 당시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피고는,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등기의 원인이 된 원인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금전을 대여한 2015년 및 2016년경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이미 합의하였고, 다만 그 등기만을 2021년에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채권액 불특정 및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들 사이의 채권관계를 알 수 없어 원고들의 채권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 비율은 원고 A, C 각 7/20, 원고 B 6/20임을 알 수 있고, 을 24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갑 1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원고들 외에도 소외 회사에 대한 다수의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함과 아울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I은 그 배당요구액이 2,048,589,040원에 이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그 전부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와 별개의 수인의 채권자들이 근저당권자인 수익자를 상대로 각자 별개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수익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 심리한다면 그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 심리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²⁾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의 이의를 인용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당초의 배당표를 작성한 배당법원에 대하여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별도의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153,972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다만,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들과 I은 각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각자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데,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액과 I의 배당요구액의 합계액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153,972원을 초과하므로, 이 판결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I이 각자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배당표를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정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153,972원을 삭제하되, 이는 원고들과 배당받을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도형석, 판사 송현정, 판사 박예지

1) 425,000,000원 = 원금 200,000,00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330,000,000원[=
200,000,000원 × 0.25 × (6 + 219일/365일, 2015. 11. 2.부터 2022. 6. 8.까지)] - 변제금
105,000,000원

2)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